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1110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23. 4. 5.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7.부터 2022. 2. 23.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여 현재 71,970,211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1. 26. C는 원고에게 71,970,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

나. C는 2023. 4. 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4,049,607원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는 인천 연수구 E, F 소재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예금 채권 57,646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 채무 합계 3,139,346,720원의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G에 대한 채무 55,498,309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D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가 피고에게 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정